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

-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

금정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

-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

금정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기준

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주차문화 의식을 개선하고자함.

Ⅰ 경 과

□ 금정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2012. 2. 1. 시행) 최초 시행
□ 금정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2016. 2. 1. 시행) 변경 시행
□ 금정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2020. 7.31. 시행) 변경 시행
□ 금정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2021. 5.11. 시행) 변경 시행
□ 금정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2023. 4. 1. 시행) 변경 시행
□ 금정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2023. 7. 1. 시행) 변경 시행

Ⅱ 시행 시기

□ 2023. 7. 1.부터

Ⅲ 관련 근거

□ 주·정차 위반 단속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조 내지 34조
□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 과태료 제외 : 도로교통법 제160조, 동법시행규칙 제142조

Ⅳ 단속 방향

□ 중앙대로·금정로·금강로 및 주요도로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주행형 차량 이용 단속 강화
□ 이면도로는 민원 다수 유발지역 등 주민 불편 지역 집중 단속
□ 주·정차 금지 장소(보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아침 단속으로 학생 통학로 확보
□ 출·퇴근 시간 및 휴일 상습정체 지역 집중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결
□ 정확한 증거 위주 및 합리적단속으로 민원불만 해소

V 단속 기준

□ 주 · 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자격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

▶ 주차문화개선팀 공무원, 도시관리과 도로관리원

□ 시간대별 단속 기준

구 분	원 칙	예 외
평 일	○ 고정식 CCTV 단속 – 단속시간 : 07:00~22:00 ○ 차량 탑재식 CCTV 단속 – 단속시간 : 07:00~22:00 ▶ 출·퇴근시간 단속(07:00~09:00/18:00~20:00)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07:00~20:00) ▶ 야간단속(18:00~22:00)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정하는 특정구간 및 시간은 집중 단속 ○ 폭우, 폭설 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다만,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 ○ 점심시간대(12:00~14:00)에는 계도 위주 단속 ○ 18:00시 이후는 야간단속 구역 이외 지역은 계도 위주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하교시간 계도 및 단속(13:00~14:00)
토·일요일 공휴일	○ 고정식 CCTV 단속 – 단속시간 07:00~22:00(주말상시단속) ○ 차량 탑재식 CCTV 단속 – 단속시간 : 09:00~18:00	○ 휴일 단속구역 이외 지역은 계도 위주 단속

□ 구역별 단속 기준 ☞ 금정구 주차단속 구역 현황도 [별첨1]

○ 중점단속구역 : 주요 간선도로, 차량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상습 위반지역 , 민원다수 유발 지역 등

○ 특별단속구역 : 특별한 사유 등으로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등을 위한 단속필요 지역

○ 일반단속구역 : 소통에 지장 없는 장소,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불편 신고 지역

단속구역별	지 정 구 역	단 속 기 준
중점단속구역	○ 중앙대로・금정로・금강로·금샘로·식물원로·반송로·청룡로·두실로·남산로·범어천로·금단로·수림로·구서로·장전로·부산대학로·소정로·무학송로·기찰로·부곡로·윤산로·부곡온천천로·장전온천천로·오시게로·서동로·서동중심로·개좌로·금사로·서금로·공단로·동현로 등 ○ 시내버스(마을버스) 운행 구간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보도·건널목·곡각지·횡단보도 주변, 번호판가림, 이중주차, 자전거도로, 버스·마을버스정류소 주변 등 ○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주・정차 상습 위반 지역 - 민원 다수 유발 지역	○ 고정식 무인단속 CCTV·주행형 CCTV 병행 단속 ○ 1일 1회 이상 순회 단속 ○ 차량 소통 방해 및 보행자 권리 침해 차량 견인 조치
특별단속구역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특정지역 단속 ○ 계도 우선 원칙, 필요시 단속 및 견인 조치
일반단속구역	○ 중점・특별단속 구역 외 일반(이면)도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불편 신고지역	○ 계도 후 불응 시 단속 ○ 견인 자제

□ 대상별 단속 기준 ☞ 주차허용 제외대상 [별첨2]

유형별	대 상	단 속 방 법	비 고
일반차량	○ 아래 유형의 차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 계도 또는 단속 ※ 견인 조치 병행	

일반차량 또는 생계형차량	○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차량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택배, 6인승 콜밴 사업용 차량 포함) ○ 노포동(2,7장날) ※ 주차 허용가능지역 별도 지정운영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 ※ 영업용 택시 – 이마트앞, 노포동 터미널 택시베이	○ 1회 계도 후 단속 ※ 필요시 견인조치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1회 30분간 주차허용 낮시간대(10:00~17:00), 야간시간대(20:00~24:00) ○ 주차허용시간 단, 2시간 내 (07:00 ~ 18:00) ○ 영업용 택시는 "비상등" 점멸 중인 택시에 한해 일정시간 단속유예 ※ 다만, 횡단보도, 보도, 이열 주차, 도로모퉁이는 제외
장애인차량	○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 1회 계도 후 단속 **※ 견인 지양** (단속에 따른 의견 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공용차량	○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되는 경우에 한함	○ 계도 또는 단속 ※ 필요시 견인 조치 (단속에 따른 의견 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 협조 요청 시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 자료(공문)제출에 한함
기타차량	○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기간중 선거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 표시(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계도 (단속에 따른 의견 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 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 단속 수단별 단속 기준

【인력 · 현장 단속(디지털카메라)】

○ 단속절차

계도 (이동조치) ➡ 현장적발 ➡ 단속표지 부착 ➡ 사진촬영 (견인연락)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단속방법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이하 "단속표지"라 한다) 작성 · 부착
- 당해 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 사진 촬영 시 당해 차안에 탑승자가 없고, "차량번호"와 도로의 주차금지 또는 주 • 정차 금지 "안내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일렬주차로 차량번호 식별 곤란 시 운전석 쪽 출입문(옆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2회 촬영
- 사진 촬영 전에 날짜기록 모드의 "일·시·분"이 맞는 지 확인, 카메라 칩의 내장 상태와 배터리 상태 등을 필히 확인

○ 단속표지 사용 및 서손 처리의 명확화

- 단속표지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단속 표지 제작·사용 [별첨3]
- 서손처리 시 단속표지 원본을 회수하고 증거자료(운전자 탑승사진 등)를 첨부하는 등 서손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반드시 정식결재 과정을 통해 서손 처리

〈예시〉

서손사유	증거자료	비 고
운전자 출현	단속표지 원본, 운전자 사진	※운전자 출현의 경우 운전자가 즉시 나타난 경우로 한정, 주•정차 단속의 형평성 논란 사전 차단
중복 단속 (현장 단속, 차량)	단속 적발 시간 비교 자료	
전산오류, 기계 오작동 등	전산 서버 입력 자료, 기계 수리 실적표 등	

【CCTV 단속(고정식, 차량 탑재식)】

○ 단속절차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1차) ➡ 증거사진 촬영 (2차)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단속방법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07:00~22:00(연중무휴) 운영
- 적발방법 : 단속 시작 후 장소에 따라 2·5·10분 초과 시 단속 완료 촬영

※ 단, 주·정차 금지 구역 내 교통흐름 방해 차량 즉시 단속 (편도1차선 택시 일렬주차행위 등)

▷ 단속시작(2회 촬영) : 최초 차량 사진, 최초 번호판 사진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 차량 사진, 최종 번호판 사진

<차량탑재식 CCTV>

- 운영시간 : 07:00~22:00(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10분 초과 시 단속 완료 촬영

▷ 단속시작(2회 촬영) : 최초 차량 사진, 최초 번호판 사진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 차량 사진, 최종 번호판 사진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 단속 가능, 이 경우 단속원이 차에서 하차하여 단속표지 부착 후, 부착된 장면의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 자료 확보(인력 단속 준용), 이동명령 불응 차량 및 1회 촬영 후 고의적인 위치 변경 차량 등은 CCTV로 1회 단속 가능 (주 • 정차 금지구역에 한함)

【안전신문고앱 신고】

○ 추진배경

-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

○ 법적근거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신고대상 : 6대 중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중점 주정차 금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 황색 이중실선)	**평일 0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연석의 높이로 구분된 인도)	**07~22시**	

구분	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7~22시** **(유예: 중점단속구역 12시~14시)**	5분
	교각 다리 위 주·정차		
	주차장 진출입구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이중주차 이미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연접하여 주·정차		
	중점단속 구역 평일, 야간, 휴일의 단속구역(시간)에 주·정차		

▷ 주택가 이면도로 : 반복 주차(경고장 3회 이상 발부한 차량)는 담당 공무원 검토 후 과태료 부과

○ 신고(접수)방법

- 안전신문고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 촬영 시간이 자동 표기되며, 위·변조가 방지됨

-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2장)에서 촬영한 사진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 위반 사실이 명확한 사진(제출된 사진2장 모두 위반사실 입증)
-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
  (제출된 사진 2장 모두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된 사진)
- 1건당 차량 1대 신고(여러 대인 경우 가장 근접한 1대만 부과)
- 신고기한 :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익일)이내

○ 과태료 부과

- 신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 요건 구비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견인 단속 기준

○ 중점 단속 구역에서의 주차위반 차량 중 도로 소통•교통사고 예방•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견인 조치

☞ 견인 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퉁이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6대 중점지역)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번호판 가림 차량

▷ 보도(인도)를 점유하거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이중주차, 주요 사거리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민원 요청 시

※ 일반·특별 단속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견인 자제

○ 견인 절차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주요 내용

① 단속 확정 후 견인대상 차량 견인업체에 연락 〈단속 공무원〉

②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및 견인 〈견인 업체〉 [별첨 4]

▶ 단속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한 안내문 부착 (도로 바닥, 인근 지장물 등) 후 견인

③ 견인 사실 차주에게 통보 〈견인 업체〉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SMS 문자 송신(견인표시 안내문 훼손에 따른 운전자 차량 소재지 파악 용이)

④ 24시간 경과 미인수 차량 차주에게 견인 사실 통지 〈견인 업체〉

⑤ 통지 후 1개월 경과 미인수 차량 매각 또는 폐차

○ 견인 방법

- 주차위반 차량 중 견인 우선 대상 차량을 견인 대상 차량으로 지목
- 견인 대상으로 지목된 차량을 견인업체에 특정하여 견인조치 통보

※ 이동식 CCTV 단속 사항이 견인업체에 그대로 송출되어 견인업체에서 임의로 견인대상 차량을 지목하여 견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Ⅵ 자동차 종류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구 분	과태료 금액		비 고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주.정차 금지구역	40,000원(50,000원)	50,000원(60,000원)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금액임.
소화전 주변	80,000원(90,000원)	90,000원(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2021.5.11. 부터 적용)	120,000(130,000원)	130,000원(140,000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20년 11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7, 3호(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부과)

Ⅶ 사전통지 · 의견제출 처리 기준

□ 주 · 정차위반 사전통지•의견제출•과태료 업무 처리 기준

○ 주 · 정차위반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불법 주 · 정차 단속 후 3 근무일 10일 이내 사전통지서[별첨5] 발송 준수
- 단, 12월 말경은 관공서 우편발송 시점 마감으로 인해 다음해 초에 발송
- 발송방법 : 등기우편

○ 주 · 정차위반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발송 시점 이후 18일 이내
- 사전통지서 반송분(번호오류 등 행정착오분에 한함), 렌트카, 리스차량 등 실제 차량운행자에 한하여 1회 의견제출 기간 재부여 가능

○ 주 · 정차위반 의견제출 심의

- '의견제출 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 구체화)[별첨6]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부과 또는 면제) 심의 후 심의 결과 통지
- 응급환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응급환자 기준[별첨7] 및 보행상 장애 기준표 [별첨8]에 의해 과태료 면제 여부 결정

○ 주 · 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소유차량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경감
- 납부지연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납기경과 3%,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50% 감경을 원칙으로 함
· 과태료 사전통지 전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경 불가
·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 가능

Ⅷ 과태료 부과 절차

□ 업무 흐름도

단 속	◆ 인력(차량)단속,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견인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 심의	◆ 18일 기간 내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제출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3%,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50% 감경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 불복시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별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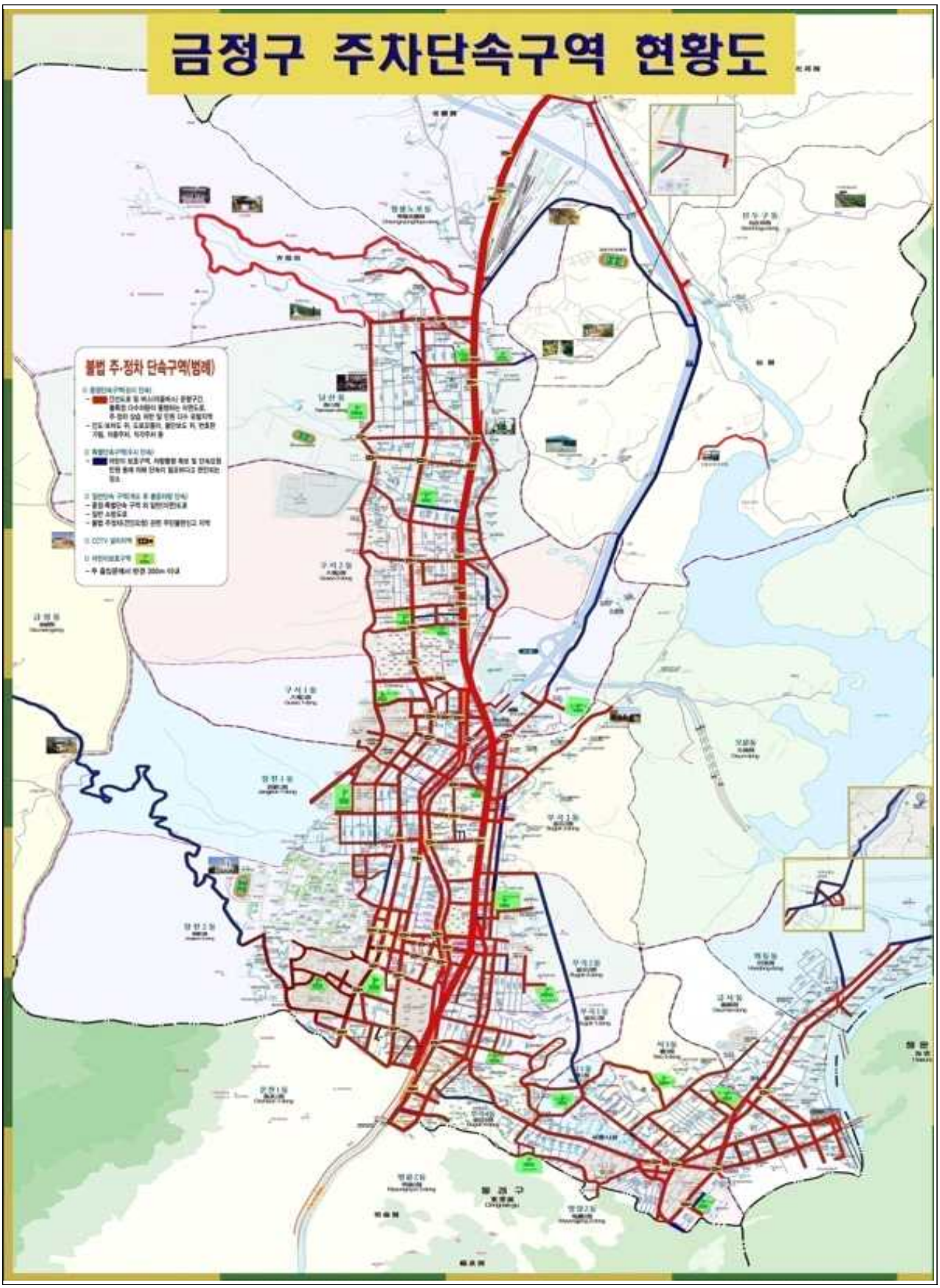

별첨2

주차허용 제외 대상

- 점심·야간·토·공휴일 및 생계형·장애인 차량 -

○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상시 발생하는 장소·시간대

○ 대형마트 등 수익시설과 근접하여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곳

○ 6대 중점 단속구역(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부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사항(보도, 주차장 출입구 막음, 안전지대, 교각, 이중주차, 이열주차, 중점단속구역)

○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곳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의 이중실선 구역

○ 주차위반 단속요청 민원 빈발하는 장소 및 시간대

○ 주·정차 허용시 소방도로 확보가 불가능 한 곳, 노폭이 좁은 편도 1차선 도로 등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주·정차금지가 필요한 곳

○ 대각주차, 이중주차 등이 만연하여 교통 정체 및 사고 위험이 극심한 지역

별첨3

○ ○ ○ ○

No. 00600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1.위반일시	20 년 월 일(:)	
2.위반장소		
3.등록번호		차종( )
4.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5.보관장소		
6.취급자		

○ ○ ○ ○

No. 00600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불법주정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금정구청(교통행정과 051-519-4561~5)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 반 일 시	20 년 월 일(:)
위 반 장 소	
차량등록번호	
위 반 내 용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차량 소유자 귀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안내】

❍ 차량소유자에게 의견진술 기한과 과태료 자진납부(부과 금액의 20% 경감 등)를 안내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해 드립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 사전통지서의 자납 고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할 때에는 과태료금액의 20%를 경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4만원→**3만2천원**/ 5만원→**4만원**)
(8만원→**6만4천원**/ 9만원→**7만2천원**)
(12만원→**9만6천원**/ 13만원→**10만4천원**)

【과태료 납부 안내】

❍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시는 경감 혜택이 없으며 과태료부과 후에는 경감 없이 4만원~14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체납 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규제 강화 내용)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과태료 체납시는 최초 1개월은 3/100의 가산금, 이후 60개월간은 12/1000의 중가산금을 매월 부과 조치합니다.▶총75% 부과

❍ 관허사업 제한

-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시는 사업의 허가나 면허정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구치소 감치

-과태료 1천만원 이상 체납시는 법원에 의해 최장 30일간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

-신용정보기관 의뢰 시 과태료 체납정보를 제공합니다.

○ ○ ○ ○

【안 내】

주・정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위반 : 주・정차금지장소 또는 주차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시간관계없음)
○ 정차위반 : 주・정차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떠나지 않은 상태로 5분을 넘어 정지한 상태
○ 주・정차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을 위반한 상태

※ 주차위반 단속시 사전예고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과태료금액≫

○ 과태료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법 조문	차량종별 과태료금액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주)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의견진술≫

아래의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단속 후 송달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기간 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난차량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중이거나 그 밖에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진술을 하실 경우에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하며 의견진술 결과에 따라 범칙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경찰서로 이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사항≫

○ 금정구청 :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 단속관계문의 : 519-4561~5
○ 납부관계문의 : 519-4501~2
○ FAX : 519-4559
○ 견인된 자동차 보관장소
- 견인사업자 : 제일견인운수 (517-0507)
- 보관장소 : 동래구 중앙대로 1520 (온천동)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불법주・정차는 도로기능을 저하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주차하실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

견인이동 통지서

(동래·금정 견인보관소)

위반차량	호
장 소	부산광역시 구 동 앞 노상
반환장소	부산광역시 동래·금정 견인보관소(아래약도 참조)
전화번호	051) 517-0507～8
반환절차	**견인보관소에** ①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② 견인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를 납부 후 차량 반환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견인 조치하였으니, 위 반환절차에 따라 차를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금정 견인보관소

보관차 인수비용

견 인 료			보관료
대상 차량	기본요금 (편도5㎞)	추가요금 (매㎞추가시)	
2.5톤 미만	40,000원	1,000원	30분당 7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45,000원	1,400원	

근거 : "부산광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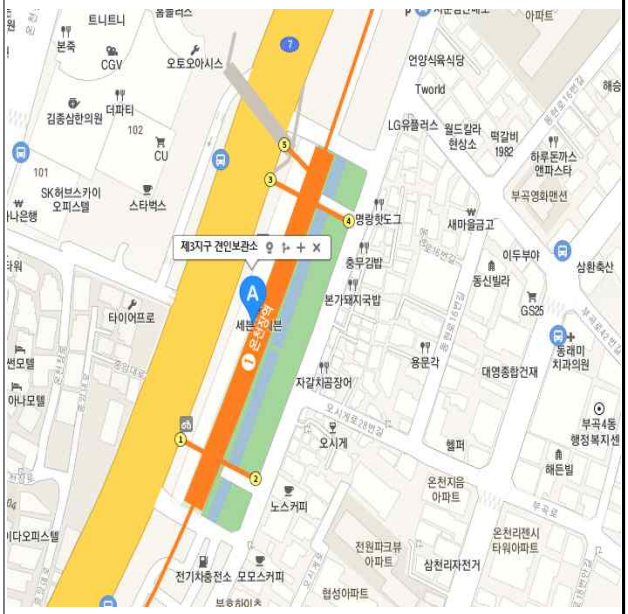

별첨5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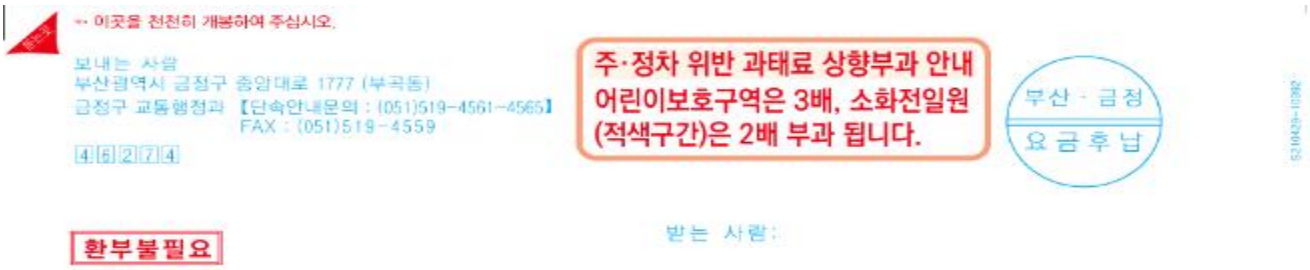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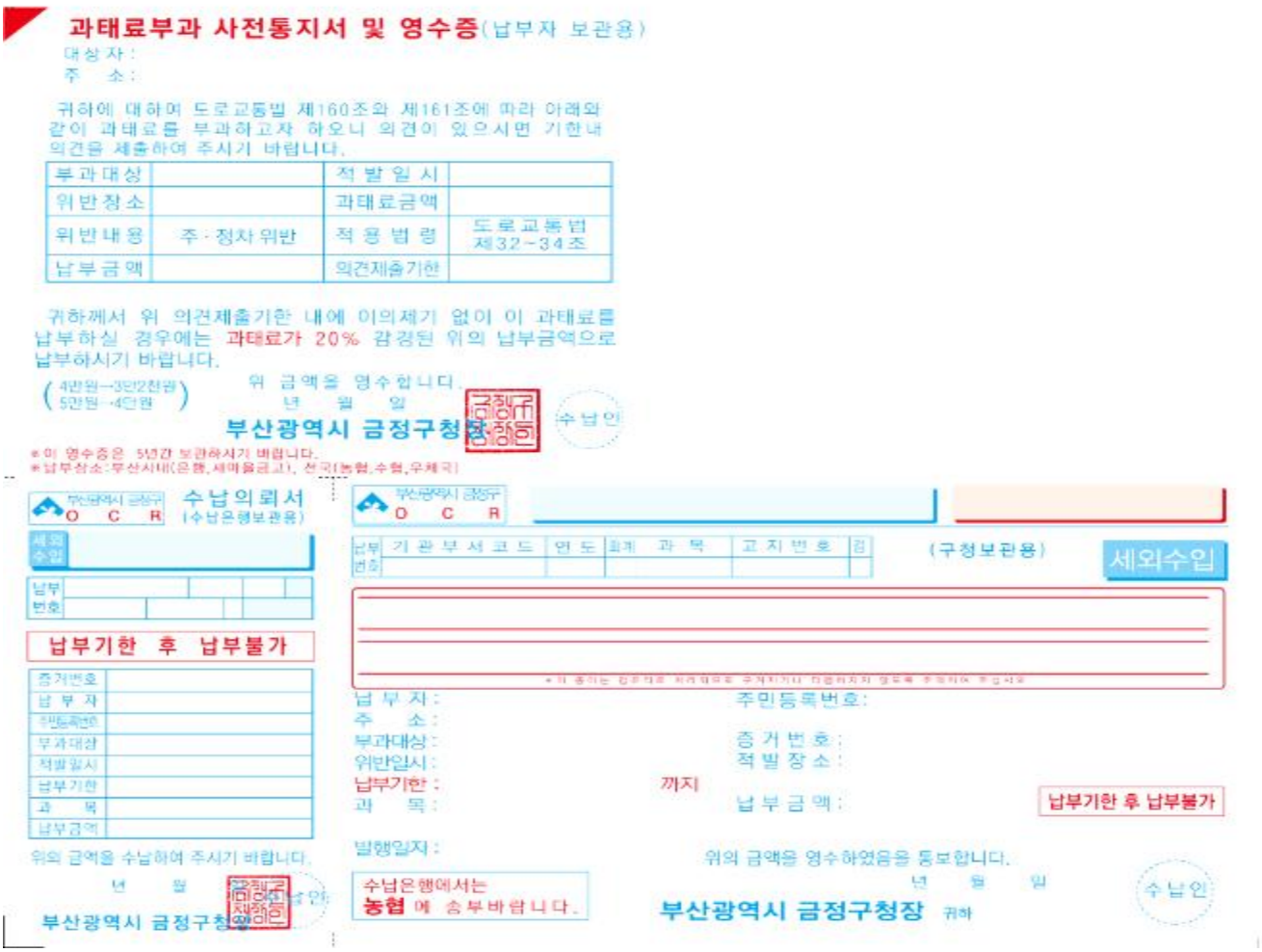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납부자 보관용)

대상자 :
주 소 :

귀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적발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위반내용	주·정차위반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제32~34조
납부금액		의견제출기한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이 과태료를 납부하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된 위의 납부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만원→3만2천원 5만원→4만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부산시내(은행,세무읍면고), 전국(농협,수협,우체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O C R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세외수입

납부번호

납부기한 후 납부불가

증거번호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부과대상	
적발일시	
납부기한	
과목	
납부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수납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O C 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구청보관용) 세외수입

납부자 :
주 소 :
부과대상 :
위반일시 :
납부기한 : 까지
과 목 :
발행일자 :

주민등록번호 :
증거번호 :
적발장소 :
납부금액 :

납부기한 후 납부불가

수납은행에서는 **농협** 에 송부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수납인

《뒷면》

【주·정차위반 무인카메라(CCTV) 또는 차량카메라 단속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무인카메라(CCTV) 또는 차량카메라로 **주 · 정차위반 차량**을 단속 및 견인합니다.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

(단위 : 원)

차 종 별	기 본	의견제출 기한내	체 납 시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50,000)	32,000(40,000)	최고 70,000(최고 87,500)
소방시설 주변 단속 차	80,000(90,000)	64,000(72,000)	최고140,000(최고157,50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차	120,000(130,000)	96,000(104,000)	최고210,000(최고227,500)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60,000)	40,000(48,000)	최고 87,500(최고105,000)
소방시설 주변 단속 차	90,000(100,000)	72,000(80,000)	최고157,500(최고175,00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차	130,000(140,000)	104,000(112,000)	최고227,500(최고245,000)

※ 괄호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당일기준)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 20%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앞면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시

▶ **과태료 50%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3급이상), 미성년자

※ 공동명의차량은 공동명의자 모두 대상자여야 감경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고,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감경됩니다.

의견진술 안내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앞면에 명시된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 단속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 제출(자진납부 과태료 20%감경 안됨)**

- 작성방법 :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이 가능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전화번호와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 (팩스 접수시 도달여부를 확인)
- 의견진술 사유별 구비서류(위급하고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진술대상 : 단속이 부당하다면 통보서 앞면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음의 사항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은행·약국 방문, 화장실 이용, 병원 통원치료, 장애인 단순 탑승)

○ 제출부서 : 부산 금정구 교통행정과로 팩스, 우편, 방문 제출 ☎ 051-519-4561~5 FAX 051-519-4559

ARS 유료전화 (1544-1414) 세외수입 납부안내

▶ ARS : 1544-1414 (유료)

- 납부방법 : ARS전화 연결 후 안내음성에 따라 해당사항 선택 (☞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는 2번 선택)
- 납부수단 :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 납부시간 : 연중무휴 00:30~23:30

전자납부 안내(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접속주소 : http://etax.busan.go.kr [납부기한 내에서만 가능]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기재사항 입력

- 입력사항 : 전자납부번호 입력
- 결제방법 :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 납부확인 : 인터넷상 영수증 출력 가능

- 메인화면상단[이용안내] ➡ 다음화면 상단메뉴[납부확인] ➡ 영수증 출력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취지** :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 **신고요건** : 1분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신고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이중실선)
- 소방시설 주변(적색 구간)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개봉방법 : 빨간색 부분을 잡고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별첨6

의견진술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인근 지역에 한함** **※ 병원내원(단순진료)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본인 또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단순 탑승 등은 면제 불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1.5톤이하 택배·소형 용달 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사고수습차량(공문서,출동내역서첨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단순 출장은 면제 불가**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고장이 일어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등에 실제 투입된 차량	관련기관 공문서, 작업지시서
	○ 모범운전자 : 교통질서 선도 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모범운전자 사용 차량	모범운전자증 사본, 이면기재(경찰관확인)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 :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의료기관확인서

별첨7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1. 응급환자의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나.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

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증 상	주 요 내 용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구 분	증 상	주 요 내 용
응급증상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별첨8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별첨9

주 · 정차 단속 관련 법규

업무 유형	법적 근거	내 용
주·정차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25호	**제2조제24호**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5호** "정차"란 운전가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업무 유형	법적 근거	내 용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